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(2016. 1. 1. 시행)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·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'17년 말까지 면제(안 제2조)
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·폐업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7조)
 - 휴업 : 휴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, 폐업 : 폐업일로부터 3개월
-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'18년 말까지 면제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
 -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 -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, 「식품산업진흥법」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'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,
- 안 제7조에서 논공단지 대채입주자에 대한 휴·폐업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'18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지방세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재산세를 '18년 12월말까지 면제토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안 제16조(감면신청 등) 제1항에서 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”를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”로 함이 타당하다 판단됨.